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실시 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3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실시 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3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승기

목 차

I. 개 요	1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 검토의견	3
1.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실시 등	3
2.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등 ...	11

I. 개 요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2. 23.

다. 회부연월일 : 2026. 2. 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신체·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등).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2. 23.

다. 회부연월일 : 2026. 2. 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신체·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제조·수출입·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마약류의 수사·단속·수거·압류·몰수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담당 직무의 특성이나 책임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 ----- -----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 -----.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마약류검사 실시)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제조·수출입·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마약류의 수사·단속·수거·압류·몰수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담당 직무의 특성이나 책임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마약류의 밀수·밀매·투약 등은 특정 계층이나 일부 범죄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음.

검찰청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 2022년 18,395명에서 2023년 27,611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2024년 23,022명, 2025년 23,403명으로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다크웹·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국내외 공급자와의 접촉이 용이해지면서 일반인이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접근성과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¹⁾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16,153	18,395	27,611	23,022	23,403
마약	1,745	2,551	3,970	1,954	1,732
향정	10,631	12,035	19,556	17,751	19,212
대마	3,777	3,809	4,085	3,317	2,459

주: 마약, 향정(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의 종류로, 대표적으로 마약은 아편, 코카인 등, 향정은 메스암페타민(히로뽕), MDMA(엑스터시) 등, 대마는 대마초, 해쉬쉬(Hashish) 등이 있음.

자료: 검찰청

1)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 제3장」, p.91., 검찰청, 2026.07.

이와 같은 마약류 확산 문제는 공직사회도 예외라고 보기 어려운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7명으로, 2019년 10명, 2020년 30명, 2021년 7명, 2022년 15명, 2023년 20명, 2024년 25명 등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공무원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²⁾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 현황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0	30	7	15	20	25	107

주: 해당 자료의 원자료인 「범죄분석」은 2026년 8월 현재 2024년도 통계를 최신 통계로 제공하고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범죄분석」(검찰청)

특히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보건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국가행정의 연속성,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2) ‘CCTV 사각지대 꿰고 있었다…공무원이 마약 운반’, 동아일보, 2026.07.24.

니한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임용 단계에서 공직 진입을 제한하였고,³⁾ 아울러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현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등⁴⁾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군인·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던 검사 제도를 마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인사혁신처는 2026.0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인사혁신처, 2026.06.09.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시행일: 2027. 2. 28.]

첫째, 마약류 검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 검사는 공무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검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중대한 영향’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 직무의 성격이나 유형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대상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마약류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과 관련, 마약류 검사의 대상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외 각 헌법기관의 규칙(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 등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법령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⁵⁾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마약류 검사가 공무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검사 대상과 범위는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행정부 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규칙제정권을 고려한 위임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마약류 확산 우려에 대응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조제1항제1호의 ‘국민’을 ‘주민’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등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②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현행	개정안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생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u><신설></u>	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현행	개정안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

<u><신 설></u> ③ ~ ⑧ (생 략)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 라.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 3. (생 략) ② 3. (생 략)	<u>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u>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2. 3.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공무원이 법률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 등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⁶⁾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 또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0년의 시효를 적용하고 있음.⁷⁾ 또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음란물 유포나 스

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토킹 범죄가 확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접근성과 과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 관련 비위에 준하는 엄정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스토킹 범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개별 행위가 일정 기간 누적·반복되는 과정에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음란 또는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역시 온라인·비대면 방식 등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위 사실이 단기간 내 적발되기 어렵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와 이어지거나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한편,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등의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해자의 신원 등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 그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지된 이후에도 진행 경과나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에 놓일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공무원이 음란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동일하게 10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의 알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안, 제2212208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안, 제2212206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가 중대한 법익 침해 행위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필요성이 높고, 해당 비위의 은밀성과 신고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를 장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도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 확보와 피해자의 알 권리 보호 측면에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